



제 1251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공 고 제2015- 127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 공 고 제2015- 1286호	도로지정공고	9
○ 공 고 제2015- 1288호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10
○ 공 고 제2015- 1290호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공시송달	11
○ 공 고 제2015- 1293호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공시송달	12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2015- 2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3
○ 남 동 구 보 건 소 공 고 제2015- 52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 송달 공고	24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7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공장등록 증명 발급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변동 사항을 조례에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 변경 전

◦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 변경 후

◦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원

4.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제12조의3(공장등록의 증명 등)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세무2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351, FAX 453-23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별첨(아래)참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공장등록 증명 발급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조정 사항을 조례에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안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공장등록증명 : 1건 , 1,000원	◦ 공장등록증명 : 1건 , 1,000원 ◦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1건 , 1,000원 ◦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 : 1건 , 2,000원

☐ 본 문 :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 “없 음”☐ 참고자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제12조의3(공장등록의 증명 등)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현행				개정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 사실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1. 사실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2)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원	
				(3)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참고자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의 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③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 3(공장등록의 증명 등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끝.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86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5. 8.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5. 8. 12. ~ 2015. 9. 14.
4. 공고 내용

도로위치	지적 면적 (㎡)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
				성 명	
수산동 94-33번지	1,617	6	298	이 * *	본인 동의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88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5. 8. 12.
- 제공받은 자 : 아진전산(주)
- 제공목적 : 자동차세 8월 수시분 및 독촉장(2015년 6월분) 인쇄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5. 8. 12. ~ 2015. 8. 27. (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5년 8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8.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년 8월 12일 ~ 2015년 8월 26일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2. 당사자	성 명	홍 * 석	주민등록번호	691020-*****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 ***(만수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250,000원 부과 예고		
5.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제1항, 동법 제8조제2항제1호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8.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년 8월 12일 ~ 2015년 8월 26일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2. 당사자	성 명	명 * 미	주민등록번호	710705-*****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 ***(만수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250,000원 부과 예고		
5.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제1항, 동법 제8조제2항제1호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5-2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책무 명시(안 제3조, 제4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촉진계획 수립 명시(안 제5조, 제6조)
- 우선구매 촉진 및 계약 방법 명기 (안 제7조)
-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평가 및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 (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453-5013, 5030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임춘원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98
----------	------

발의연월일 : 2015. 08. 11 .

발 의 자 : 임춘원 의원

찬 성 자 : 신동섭의원 외 5인

☐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책무 명시 (안 제3조, 제4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촉진계획 수립 명시 (안 제5조, 제6조)
- 우선구매 촉진 및 계약 방법 명기 (안 제7조)
-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평가 및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3.“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공사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 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1.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 · 호흡기장애인 · 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 · 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 지체장애인 · 청각장애인 · 신장장애인 · 뇌전증 장애인 · 간장애인 · 안면장애인 · 장루 · 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2014.5.20] [[시행일 2014.11.21]]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1.22]]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11240호(장애인복지법)] [[시행일 2012.7.27]]

-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20] [[시행일 2014.11.21]]
- ④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4.5.20] [[시행일 2014.11.21]]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2014.5.20] [[시행일 2014.11.21]]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 [본조제목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3]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 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2.3]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물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1.2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9조 비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춘원 의원 (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52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처분예정사항(직권말소)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8. 25.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08. 08. ~ 2015. 08. 24. (17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2013- 0199338	통돼지집	김*자	논현고잔로128번길 10 (고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2.28.	2015.08.2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8. 24.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5. 08. 0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